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가스요금(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기획예산실장,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시정기획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문화행정계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11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서울특별시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영 제58조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학생수 60명 미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
- 2.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